

산업통상자원부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, 수도권 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「수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,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.
(안 제2조제8호나목)

나.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「수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. (안 제16조)

다.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함. (안 제4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중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나목 중 “생산제품”을 “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제품(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“별지 제2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장 소재지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각 다음 각 호의”를 “「수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환경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제4호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 등(이하 “감정평가법인 등”이라 한다)이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임대사업자”를 “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경우 별지

제2호의3서식을 말하며, 임대사업자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 등이”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] 승인대상 외 등록신청 공장
[] 지식산업센터

사업계획서

1. 사업개요				
업체 현황	회사	명칭		
		주소		
		전화번호	팩스번호	
	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성명	이메일 주소	
		전화번호	생년월일	

생산품	업종(5단위)		
서비스	생산품(서비스)명	주 원자재	

사업장 현황	주 소			
	형 태	분양()	양수()	임차() 기타()
	용 도 지 역			지 목
	근 로 자 수	내국인(남: 여:)	외국인(남: 여:)	
	공 장 의 규 모	용지 면적	m ²	
		건축 면적	제조시설:	m ²
			부대시설:	m ²
		건축 면적 / 용지 면적	%	
		기준공장(건축)면적율	%	
		기업규모	대() 중견() 중() 소()	

투자	자기자본	백만원	외국인 투자금액	천불
규모	타인자본	백만원	외국인 투자비율	%

2. 사업내용					
시 설 (장비) 현 황	시설명	용량 및 규격 (HP · kW · 톤 등)	수량	배출오염물질 종류	배출량
생산(서비스) 공정도		생산(서비스) 공정 요약 설명			
[]					
▼					
[]					
▼					
[]					
▼					
[]					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,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재요령	
1. 업종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(5단위)까지 적습니다.	
2. 기업규모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합니다.	
3. 배출시설은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.	
4.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.	

별지 제9호서식의 제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제2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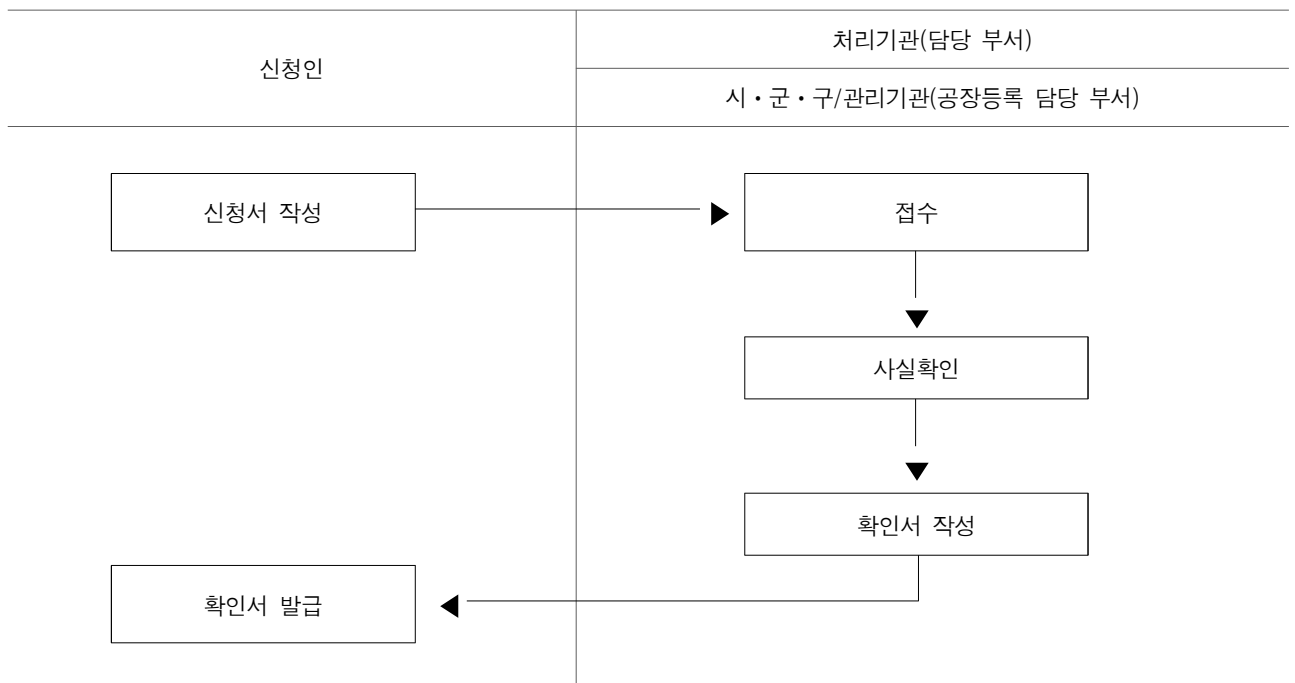
제조시설 명세(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)

제조시설명	용량	수량	배출오염물질		방지시설 설치계획
			종류	배출량	

※ 등록 현재 기준으로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,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(신고)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부대시설의 범위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생략) 8. 다음 각 목의 시설 가. (생략) 나. 제품판매장(해당 공장의 <u>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</u> 로 한정한다) 다. (생략) 8의2.·9. (생략) 제12조(공장등록신청서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<u>별지 제2호의2서식</u> 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	제2조(부대시설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제품(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</u> 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8의2.·9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공장등록신청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</u> ----- -----

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16조(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설립허용기준)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”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장을 말한다.

1.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

---.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장 소재지

제16조(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설립허용기준) -----

-- 「수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환경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---.

<삭제>

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「물환
정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
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
요로 하지 않는 공장

2.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
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
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
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
인 공장

제30조(재산의 종류 등) ① (생
략)

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
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
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
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
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
행한 감정평가서

제34조(입주계약신청 등) ① 법
제38조제1항·제3항 또는 법 제
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
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
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

<삭 제>

제30조(재산의 종류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 감정평가법인 등(이하 “감
정평가법인 등”이라 한다)이

제34조(입주계약신청 등) ① ----

시설(이하 “공장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(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(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)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7조(처분신청서 등)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, 처분신청서에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42조(입주계약의 해지기간) ① (생략)

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2년을 말한다.

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말하며, 임대사업자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처분신청서 등) ①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 등이 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입주계약의 해지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3년-----.